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1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
함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
강효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“「군사시설보호법」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”로 규정되어 있는데, 이 중 「군사시설 보호법」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「군사시설보호법」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.

따라서 「군사시설보호법」을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17조제1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5호 중 “「군사시설보호법」 제7조에”를 “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9조에”로, “제10조에”를 “제13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